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8.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촌정책과)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 기준에 박사, 석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까지만 정하고 있어 학위 소지자가 아닌 관련 경력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 중 관련 경력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3)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학사 학위 미만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에 대한 인력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제19조의3제1항에”를 각각 “제19조의4
제1항에”로 한다.

별표 3 인력란의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3 인력란의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 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 ----- ----- -----제19조의4제1항에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 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9조의4제1항에-----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	④ ----- ----- ----- ----- -----

하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생략)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생략)

[별표 3]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정기준
조 직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 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 력	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 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신설)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제19조의4제1항에-----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별표 3]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정기준
조 직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 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 력	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 문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4. 업무책임자와 직원은 전문지원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시 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 보할 것	시 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 보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519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 락 처	(044) 200 - 5462